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지원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7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지원(안 제30조의6 신설) .....                          | 2 |
| 2. 우선수용병원 의료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가능<br>(안 제63조제3항 신설) ..... | 6 |
| 3. 관계기관 의견 .....                                              | 9 |



## I. 개요

###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578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뱅뱅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지원(안 제30조의6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하 “우선수용병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수용병원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u>제30조의6(우선수용병원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하 “우선수용병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 |

|  |                                                                                                                                                                 |
|--|-----------------------------------------------------------------------------------------------------------------------------------------------------------------|
|  | <p>② <u>우선수용병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우선수용병원의 지정·운영 및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명 ‘응급실 뽕뽕이’로 지칭되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수용 지연 및 재이송 문제를 개선하고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며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119구급대의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전체 이송 건수(1,807,486명) 중 10분 이내 이송이 46.3%(837,759명)를 차지하나, 병원 이송에 30분이 초과된 경우도 9.6%(172,955명)를 차지하며, 그 중 1.5%(26,529명)은 환자가 60분을 초과하여 병원에 이송됨<sup>1)</sup>.

- 이송된 환자의 연간 재이송 건수는 4,227건임<sup>2)</sup>.

1) 2024년 기준(소방청, 2025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2025. 6.)

2) 2023년 기준이며, 1~4차 재이송 건수의 합계(소방청, 2024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2024. 6.)

□ 또한 우선수용병원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이 우선수용병원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기 위하여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응급의료기금은 현행법 제21조<sup>3)</sup>에 근거하여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임. 또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sup>4)</sup>.

- 시범사업 진행지역(3개 광역 지자체):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6. 2. 2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하 같음.

- 우선수용병원 지정·운용(안):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함<sup>5)</sup>.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건복지부의 해당 시범사업의 시행 경과 및 성과·보완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수용병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5) 단, 최중증응급환자(심정지 등)는 사전 약속된 지침에 따라 곧바로 이송

## 2. 우선수용병원 의료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가능(안 제63조제3항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sup>6)</sup>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② (생략)<br><u>&lt;신 설&gt;</u> | 제63조(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6)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에서 우선수용병원 의료인의 응급의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수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의료사고에 관한 부담을 줄이고 응급환자 수용을 촉진하여 우선수용병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의 형사처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과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감경·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의료인력의 형사처벌 부담완화 대책(안) (보건복지부) >

- 의료사고 책임 보험·공제 가입 시
  - ①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 ②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반의사 불벌)
-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등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의료개혁-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2026. 3. 현재)

- 또한, 동 개정안 외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의 임의적 감면<sup>7)</sup>에서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sup>8)</sup>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8)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김윤의원·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의 필요적 감면 관련 주요 내용)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제2203411호, 발의일 2024. 8. 30.)

안 제5조의2(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종사자

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제2213901호, 발의일 2025. 11. 4.)

안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제16833호, 발의일 2026. 2. 12.)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 3.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적정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만, 우선수용병원 이송은 응급실 이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63조제3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된 상황 및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은 의료사고에 노출이 크므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적극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의 필요적 면책 필요

□ (대한병원협회) 우선수용병원 제도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이후 입법 조치를 논의할 필요

또한 과도한 처벌과 형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필요적 면책 필요

|              |
|--------------|
| 문 의 처        |
| 02)6788-5509 |